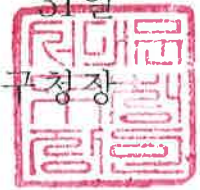
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7월 31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급지 별 주간과 야간 요금만 명시하고 있는 현행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에서 전일 요금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, 노외주차장의 급지 별 주간과 야간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주차요금 부과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보완·정비 (안 별표 1)

- 급지 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 전일요금 신설  
→ 노상 및 노외주차장 별도 요금기준 마련
- 노외주차장의 급지 별 주간 및 야간 주차요금 일부 조정  
(3급지 야간, 4·5급지 주·야간 요금 상향 조정)
- 노상 5급지 전일요금만 규정하던 참고 삭제 (신설사항에 편입)
- 비고란에 전일의 시간구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정하도록 추가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교통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정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(03718)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

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30-1865, 팩스 02-330-1638